

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안태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5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3.

발 의 자 : 안태준 · 이언주 · 문진석
정준호 · 안규백 · 소병훈
윤종균 · 권철승 · 김정호
이정문 · 염태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물품을 포함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(貸付)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한국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확보를 위해 25년 이상 경과 한 노후 철도 역사에 대한 개량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
그런데, 과거 철도청 체제에서는 공유지 무상점용 협의가 가능했으나, 한국철도공사 전환 이후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상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부재로 노후 역사를 개량하거나, 출입구 신설 시 기존에 점유했던 부지나 추가로 점유되어야 할 부지에 대한 점용료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노후역사 개량사업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확보, 교통인프라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 사업인 만큼 원활한 추진과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공유지의 무상점용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.

이에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화된 역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).

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”을 “(국유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 시설의 개량사업에 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(貸付)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을 허가한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	제14조(국유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① (생 략)	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 시설의 개량사업에 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(貸付) 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② (생 략)	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을 허가한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
<신 설>	⑤ 제1항 및 제2항
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·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-----

	-----.